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중요 사항 안내

구분	세부사항
목적	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교육대상	-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※ 매 2년마다 출생 연도 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
교육방법	-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- <u>대면교육(8시간)</u> 또는 <u>온라인(4시간) + 대면(4시간)</u> 병행 교육
★중요 안내사항	‘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’을 <u>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</u> 예정이니, 장기요양기관은 ‘24년부터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합니다. ※ 평가지표 확정 시 해당 부서에서 별도 안내
	‘24년 4/4분기 주요 변경사항 <u>2024년 11월 이후</u> 신규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생년 <u>짝수년생</u> 요양보호사 → <u>2026년에 이수 대상</u> ... 홀수년생은 2025년 대상 - 기 근무 중인 짝수년생 요양보호사 : <u>반드시 당해 연도 내</u> 모든 교육 영역 이수하여야 인정됨. ※ 온라인+대면교육 병행 수강자 및 대면교육 2회 분할 수강자도 <u>2024.12.31.까지 이수하여야 인정</u> ‘24년 <u>4/4분기</u>에는 모든 대면 보수교육기관은 ‘다·라 영역’ 단독 운영 가능

신청 전 확인	- 요양보호사는 ‘건강보험자격’ 상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이수자 검증이 되므로, 건강보험 자격 상 정보로 반드시 신청바랍니다. ... 특히 온라인 교육생 등 외국인, 영문명 주의하여 사전 확인 후 신청! ※ 방문요양 및 목욕기관 : 건강보험 자격 정보 = 지자체 인력 신고 정보 일치해야 청구명단에서 확인됨 - 당해 연도 내에 모든 교육 영역을 이수하여야 ‘이수’로 인정됨 - 온라인 + 대면 병행 교육생은 온라인 먼저 수강(4시간)한 후, ‘온라인 수강 확인증’을 대면교육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, 대면교육 다·라 영역(4시간)에 대해서만 추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출결 강조	- 대리출석, 무단이탈 등 기타 부정한 방법 금함 - 1일 8시간 기준 최소3회 이상 출석확인(신분증 제시, 정자체 기재) - ‘이수증’ 수령 전 정보 재확인! · 방문형 근무자의 경우 청구 요청할 기관 기재 · 최초 발급 이수증과 달리하여 다시 발급 불가(위변조 등 방지) ※ 다만, 이수증에 기재한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더라도, 요양보호사 근무 요건 충족하면 요양보호사는 타 장기요양기관에 청구 요청 가능함 - ‘QR 만족도 조사’ 반드시 본인이 사용 중이 휴대전화로 직접 참여
청구대상	- 고시 제11조의5(요양보호사 보수교육) ◆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*하는 요양보호사 * ‘교육이수일’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연계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 중 (근무시작일~근무종료일)인 요양보호사 - 이수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상 ‘소속 및 근무 중’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보수교육 대상 및 청구대상 아님 ★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이수증을 제시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(이수증 보관 : 3년) ★ 급여비용 청구는 보수교육 이수한 다다음달부터 가능

청구제외	- 고시 제11조의5 제2항(요양보호사 보수교육) ‘교육이수월’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
근로시간 인정	- 고시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3.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. 5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교육 면제대상	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 제2항 ◆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☞ 면제대상 증빙 방법 ... 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되는 자료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○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(12.31.)까지 면제 - 2022년 합격자 → 23년, 24년까지 면제 → 25년도 생년 홀수부터 대상 - 2023년 합격자 → 24년, 25년까지 면제 → 26년도 생년 짝수부터 대상 - 2024년 합격자 → 25년, 26년까지 면제 → 27년도 생년 홀수부터 대상
기타	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격으로 이수증이 발급되므로 교육 대상 연도에 한 차례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(장기요양기관 별로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.)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서식

제 호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

- 성 명:
- 생 년 월 일:
- 소 속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,
실제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명 기재
- 자 격 번 호 요양보호사 자격번호

위 사람은 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「노인장기요양
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명+*장*

○○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

예시) *ABC요양보호사교육원장*

ABC협회장

ABC센터장

기관직인

직인